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12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14년 9월 2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김숙희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인 「도로법」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
 - 「도로법」 제76조 ➔ 제91조 (안 제1조, 제3조제1항)
 - 「도로법」 제90조 ➔ 제94조 (안 제4조제1항)
- 상위법령의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규정 조항 인용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로법」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

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조례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「도로법」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,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「도로법」 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.

- 「도로법」의 전부개정(2014.1.14,시행 2014. 7. 15)과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가 개정·시행(2014. 7. 17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1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인 「도로법」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
 - 「도로법」 제76조 ➡ 제91조 (안 제1조, 제3조제1항)
 - 「도로법」 제90조 ➡ 제94조 (안 제4조제1항)
 - 상위법령의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규정 조항 인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불필요

다. 협의사항

- 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4.7.17~8.6,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 제76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9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도로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”를 “「도로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1조”로 하고, “다른 공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른 공사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 명 “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”를 “(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